



고 용 노 동 부

수신 건설업 사업주 귀하

(경유)

제목 건설업 외국인노동자 현장간 이동 요건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1. 귀 사업장(현장)의 무궁한 발전 및 안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현장의 외국인노동자 인력 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설업 외국인노동자의 현장간 이동 사유제한을 폐지**하고 신고에 따른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26.9.14.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① 현장간 이동
 - (기존) 공사현장 종료 혹은 특정 공정 만료 등 특정 사유에만 제한적 허용
 - (개선) 현장간 이동 사유제한 폐지, 노사간 동의한 경우에는 이동 가능
 - ② 제출서류 간소화
 - (기존)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 하도급 계약서, 건설업등록증, 외국인력현황표, 해당 외국인노동자 여권 외국인등록증, 새로운 표준근로계약서, 공사중단 등 이동사유 입증 서류 등
 - (개선) 신고서, 해당 외국인노동자 여권 외국인등록증, 새로운 표준근로계약서 등
3. 다만 **이동 예정 현장**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제외한 **고용허가 발급요건***을 심사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 ▲ 현장간 이동 신청한 날의 2개월 전부터 허가일까지 내국인 고용조정 여부, ▲ 5개월 전부터 허가일까지 임금체불 여부, ▲ 고용 산재보험 및 전용보험 가입 여부
4. 현장간 이동 관련한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고용노동관서 연락처 1부. 끝.



주무관	조수경	행정사무관	이정현	외국인력담당관	전결 2026. 9. 9. 한은숙
협조자					
시행	외국인력담당관-3031	(2026. 9. 9.)	접수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어진동 581)	고용노동부	/	www.moel.go.kr
전화번호	044-202-7153	팩스번호	02-2069-0635	/	jsookng29@korea.kr / 비공개(5)